

「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」(국토교통부훈령 제1548호, 2022.8.17.)
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
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
합니다.

2023년 4월 14일
국토교통부장관

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항공사 및 공항의 서비스 품질 개선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
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을 신설·변경·삭제하고, 그에
따른 배점 조정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

2. 주요내용

- 가. 항공운송서비스 평가(별표1)의 평가항목 변경 및 배점 수정
- 나. 항공운송서비스 중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(별표2)의 '내용 변경 및
배점 수정
- 다. [별표3] 삭제에 따라 [별표4]를 [별표3], [별표5]를 [별표4]로 순번
부여하고, 공항서비스 평가(현재 별표4) 세부 평가항목 변경 및
배점 수정
- 라. 항공사업법령의 규정에 맞게 제1조(목적)의 인용 조문 변경 및
용어 정비 등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→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6동 632호
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
- 전화 : 044-201-4231, 4230 / 팩스 : 044-201-5625